

제 2021-8 호

[교 훈] 성실·봉사·창조

# 小松夏似是

https://school.ibedu.kr/asr

신림중학교 ☎ 562-4006

##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문

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대응으로 전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 방적 조치를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- 3 등교하지 말고 가정에서 건강상태 관찰 - 3 - 마스크 개인별 준비	등교 시 발열 여부 확인 (전교생) 학교일과 중에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37.5℃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 시 가정에 연락 후 귀가 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입제한 출입 시 방문기록, 손 소독, 마스크 착용 필수

### 가정 협조 사항

- 1. <u>발열 (37.5도 이상)과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/목아픔 등)이 있는 경우 선별 진료소 방문</u>음성이더라도 ①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② 외출 자제 ③ 3~4일 정도 경과관찰
- 2. 고열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<u>1339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 상담 후 재 방문</u> 선별진료소를 이용 (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자차 이용,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)

### 고창군 선별진료소

063-560-8716 고창군 보건소 (안덕근주무관-010-2365-4719)

063-560-5524 (의)석천재단 고창병원

063-560-1694(고창교육지원청-조진명주무관: 010-7313-7119)

- 3.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, 대중교통 이용, 다중이용시설 이용, 타인과의 접촉 등 자제
- 4.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5일

# 신 림 중 학 교 장

(등교중지 대상 학생) 특정 학생이「학교보건법」제8조,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'출석인정결석' 처리

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**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** 되는 경우, **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** 처리

### 【등교중지 대상 학생】

대상	등교 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 22호 서식]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	<유의사항> -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	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•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 ※ 임상증상 발현 시 '유·초·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(제3판)'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·문의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  •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통지 사본 등) 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
	<ul> <li>※ 참고사항</li> <li>▶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(방역지침 40쪽참고)</li> </ul>	<ul> <li>▶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 등</li> <li>※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</li> <li>※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</li> <li>☞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따라 별도 처리</li> </ul>

하는 것이 목적임

※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,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

### 【 대상 학생별 정의 】

- ※ **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**(중대본, 교육부)이 **개정**되는 경우, **사례별 정의** 및 **등교중** 지 관련 세부사항(기간, 등교재개 요건 등)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, 재안내 예정. 등교중지 기간은 '출석인정결석' 처리
- ※ 코로나19 **주요 임상증상**: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<del>근육통</del>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 는 폐렴 등
- 확진 받은 학생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(코로나19)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
- 격리 통지 받은 학생: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
-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
  - ※ 해외 입국자 중 '격리면제 대상자'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님
- 임상증상 발현학생: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

# 【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】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 [참고 9]

- (기본원칙)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·검사 받기
  -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,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
    - ※ 귀가 후 3~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
    - ※ (예시) 해열제 복용하여 6.7.(일)에 열이 내려가고, 6.8.(월)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
- (예외)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(1.20.)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(또는 진단서)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
  -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(방문) 내역(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)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
    - ※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
- ※ 출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9-4판),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

- **(고위험군학생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**를 통해 인정된 **기저질환**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 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장애<sup>\*</sup>를 가진 학생의 경우, **'출석인정 결석<sup>\*\*</sup>' 또는** '질병결석<sup>\*\*\*</sup>' 처리
  - \*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에 한하며,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
  - \*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([참고1] 참조)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 - \*\*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관심, 주의"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등)한 경우
  -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  - ※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자체 계획에 의함
- (기타 미등교학생)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'기타결석' 처리
  - 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 - ※ "심각 경계"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'출석인정 결석' 처리 가능
  - ※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-졸업 불가,
- (예방접종)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**출석 인정** 처리
- **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**되며, **원격수업**(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
  - ※ 단, 학교의 지필·수행평가 기간(시간)은 미인정 결석(결시) 처리함
  - ※ 증빙서류: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